

# 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4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2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제안이유

-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의 폐지에 따라 기 적립금을 평창군주민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함.

## 주요골자

- 제2조에 생활보호기금적립금 신설.

##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없음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관계부처 승인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.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,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생활보호기금 적립금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폐지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한 평창군생활보호기금 적립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<p>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<u>(신설)</u></p> <p>2. 기금의 운용수익금</p> <p>3. 기타 잡수입</p>	<p>제2조(기금의 조성)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생활보호기금 적립금</u></p> <p>3. 기금의 운용수익금</p> <p>4. 기타 잡수입</p>